

의안번호	2200653
의 퇴 인	김한규 의원
회 답 일	2024. 7. 3.
추계번호	24A0890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. 이 경우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20조제3항 신설)
-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재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라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, 개정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('23.7 지정) 중 전략산업 영위업체가 전력공급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음
 - (2023년) 용인·평택 용수·전력공급시설에 각 단지별 500억원씩 국비 지원

- (2024년)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37.5억원

□ 다만,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에 포항 배출염수 지하관로시설, 청주·새만금 전력공급시설 등 지원과 관련하여 총 217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

[표 3] 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	2023실적	2024예산	2025계획
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	50,000	—	—
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	50,000	—	—
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—	3,750	—
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—	—	7,200
청주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—	—	3,662.5
새만금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—	—	10,850

주* 2025년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소요금액을 명시한 것임(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)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